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281
----------	-------

발의연월일 : 2026. 4. 13.

발 의 자 : 박해철 · 박균택 · 한민수
정준호 · 송옥주 · 박지원
박 정 · 임미애 · 이주희
정진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 단위로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인구감소지역 등에는 각종 지원 특례를 적용해서 인구감소 예방을 도모하고 있음.

최근 행정동 단위에서 인구가 매우 급격하게 감소하는 지역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시·군·구 단위로만 인구감소지역 등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감소 예방 지원에 사각지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행정동 단위로도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행정 단위로 보다 세밀하게 인구감소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신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인구감소지역등 지정) ①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정하는 경우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행정동을 인구감소지역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등으로 지정된 행정동에 대하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동 단위의 인구감소지역등 지정을 포함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21조의2(인구감소지역등 지정)</u></p> <p>① <u>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정하는 경우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행정동을 인구감소지역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u></p> <p>②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등으로 지정된 행정동에 대하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u></p> <p>③ <u>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동 단위의 인구감소지역등 지정을 포함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